

#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68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5. 8. 24  
제출자 : 안산시장

## □ 제안이유

-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, 노사민정협의회를 지원하는 사무국 설치에 관한 규정 신설 및 하부협의체로서의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「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명시하여 상위법령에 합치되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.

## □ 주요내용

### 가. 노사민정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
-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노, 사, 민, 정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함.
-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.

### 나.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8조의2)

-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며,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를 지원.

## □ 입법예고 결과 : 의견있음

- 입법예고 : 2015. 6. 5. ~ 6. 25.(20일간)
- 입법예고결과 : 의견있음 ※ 의견반영하여 조문 정비

## □ 개정 조례안 : 붙임1

## □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2

## □ 관계법령 발췌서 : 붙임3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붙임4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5

- 현행조례
-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계획

## 입법예고 의견 및 검토 결과

의견 제출자	의견 내용	검토 의견	비 고
감사관	<p>예산지원 경비 집행에 대한 통제 장치 및 불법·부당집행에 대한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 보완 필요</p> <p>- 예산지원 경비의 집행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의한다. 는 조항 신설 요구.</p>	<p>예산지원 경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견을 반영 할 필요성이 있음 (반영)</p>	

## ( 불임 1 )

# 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 각 항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위원은 노동단체·사용자 단체·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·안산시의 노사업무 실무책임자와 고용·노동관계 전문가, 공익을 대표하는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- ④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

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조의2(사무국)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.

③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⑤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산업정책과
임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산업정책과장 김동완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노동정책계장 최훈봉
	담당자 성명·전화	권용철 (행정 2283)

## ( 불임 2 )

#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4조(구성) 협의회는</u> ----- -----. <u>① (생략)</u> <u>② (생략)</u> <u>③ (생략)</u> <u>④ (생략)</u>	제4조(구성) ① (현행 제4조 각항 외의 부분과 같음)  ②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<u>제8조(실무협의회) ① (생 략)</u> <u>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</u> <u>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로 위원장이</u> <u>정한다.</u>	제8조(실무협의회) ① (현행과 같음)  ② -----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--.  ③ 위원은 노동단체 · 사용자단체 · 중부 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 · 안산시의 노사 업무 실무책임자와 고용 · 노동관계 전문가, 공익을 대표하는 노사문제에 풍부한 경험 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.
<신 설>	④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회에 분과위원회를 따로 둘 수 있다.  ⑤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 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<신 설>	제8조의2(사무국)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 치할 수 있다.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.  ③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 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  ⑤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<신 설>	

# **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의 안 번 호	2681
--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5년 9월 15일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회

## 제안이유

- 안 제8조의2 중 사무국에 대하여 일관성 있는 조문을 사용하고자 함

## 주요내용

- 안 제8조의2 중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‘둔다’라는 표현을 ‘둘 수 있다’로 수정함

# **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안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8조의2 제2항 중 ‘둔다’를 ‘둘 수 있다’로 수정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&lt;신 설&gt;</p>	<p>제8조의2(사무국)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.</p> <p>③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⑤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	<p>제8조의2(사무국)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.</p> <p>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</p> <p>③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노사민정간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비의 집행,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「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⑤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</p>